무배당 신한 이율보증형 퇴직적립식보험 상품설명서 II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본 상품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보험기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시 약정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퇴직연금사업팀 02-3455-4721, 4704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구 분	내용
상품유형	원리금보장형
가입대상	무배당 신한 이율보증형 퇴직적립식보험II의 보험계약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인 신탁업자(이하 계약자)
상품개요	'운용관리기관이 계약자 또는 가입자에게 전달한 사용자의 운용지시'(이하 계약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으로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적용이율을 확정 적용하는 '확정금리' 상품입니다.
상품구조	'계약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상품에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납입된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이 설정되며, 계약자 또는 가입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합니다. **이율보증기간** 1년, 3년, 5년, [DB] 일단위 만기지정식(1년초과 2년미만, 3년초과 4년미만, 5년초과 6년미만) 납입된 부담금은 단위보험별로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일까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리 · 적립되며,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이율보증기간과 동일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하며,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 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또는 지방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당사 홈페이지 공시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라이프 홈페이지(www.shinhanlife.co.kr) > 공시실 > 상품공시 > 퇴직연금 > 퇴직연금사업자공시 > 원리금보장상품 현황

<table>
<tr><th>구 분</th><th>내용</th></tr>
<tr><td>만기
처리방법</td><td>[D B]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의 변경 요청이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공시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 일단위 만기지정식(1년초과 2년미만), 일단위 만기지정식(3년초과 4년미만), 또는 일단위 만기지정식(5년초과 6년미만) 보증기간은 경과기간 각각 1년초과 2년미만, 3년초과 4년 미만, 5년초과 6년미만 사이에서 계약자가 지정하는 특정일까지로 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일단위 만기기정식(1년초과 2년미만)인 경우는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을 1년으로, 일단위 만기지정식(3년초과 4년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을 3년으로, 일단위 만기지정석(5년초과 6년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공시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DC/IRP] 회사는 계약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만기상환합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상환합니다.</td></tr>
<tr><td>중도해지에 관한
사항</td><td>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자 또는 가입자의 보호 및 상품 안정화를 위해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시점(재설정된 경우 재설정시점)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전기간에 걸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table>
<tr><th>보험종목</th><th>이율보증형 중도해지이율</th></tr>
<tr><td>이율보증형 I</td><td>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I 적용이율의 50%」</td></tr>
<tr><td>이율보증형 II</td><td>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의 20%」</td></tr>
</table>
- 단, 다음사유(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및 만기일 ±3영업일 이내에 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table>
<tr><th>[DB]</th><th>[DC]</th><th>[IRP]</th></tr>
<tr><td>①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②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③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④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⑤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⑥가입자가 확정급여형에서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⑦관계사의 전출입으로 이전하는 경우
⑧법16조 제4항에 의해 반환되는 경우</td><td>①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②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③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④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⑤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⑥법제22조에따라적립금을중도인출하는경우
⑦관계사의 전출입으로 이전하는 경우
⑧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td><td>①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②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③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④법 제20조 제7항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받은 후 해당 상품 만기 전 해지하는 경우
⑤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td></tr>
</table></td></tr>
</table>

▣ 기타안내사항(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 관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예금자
보호여부</td><td>DC/IRP</td><td>대상</td><td>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td></tr>
<tr><td>DB</td><td>비대상</td><td>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td></tr>
<tr><td>위법계약해지</td><td colspan="3">계약자 또는 가입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법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해지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td></tr>
<tr><td>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td><td colspan="3">이 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영업담당자, 신한라이프 고객센터(1588-5580), 신한라이프 홈페이지(www.shinhanlife.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td></tr>
</table>

주요 내용 안내 확인
(설명 받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확인”란에 (V)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확인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한 날의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되며, QR코드를 통해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적용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위보험 별로 만기일 ±3영업일 기간 외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

설 명 내 용
상품유형, 가입대상, 상품개요, 상품구조, 보험기간,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만기처리방법
예금자 보호여부, 위법계약해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회사는 고객(계약자 또는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고객은 설명받는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또는 가입자가 상품설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서명(전자서명 포함)하실 경우에는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계약자 또는 가입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 객 명	(서명 · 날인)

영업담당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서에 따라 충분히 설명하였고, 설명한 내용은 이 설명서 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업담당자	[소속]	[성명]	(서명 · 날인)